

우리나라 한의학의 사람해부 역사

김수명*

I. 서론

의학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인 사람해부학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유교사상의 관습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에게 예를 더욱 중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죽은 사람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다든지 또는 해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즉 털끝조차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관습때문에 사람해부는 서양에 비해 매우 늦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양에서는 일찌기 로마시대 Galenus (AD 130-201)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부생리를 집대성했고, Leonard da Vinci(1452-1519)는 예술적으로 750여점의 사람해부도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근대적 육안해부학의 기초가 된 것은 Andreas Vesalius(1514 - 1564)가 최초의 해부학 서적인 DE HUMANI CORPORIS FABRICA를 간행한 이후부터이다¹⁾.

동양에서는 중국의 송대에 시체를 해부한 기록이 있으며, 경력년간 (1041-1048)에 광서지방에서 도둑 구회범의 배를 가르고 장부를 그렸다는 기록이 전한다²⁾.

한편 100년 전만해도 우리의학인 한의학이 의학이었고 의원(의사)이라고 불리었는데 일제가 들어서고부터는 서양의학이 들어와 주객이 바뀌어 버렸고³⁾, 명맥만 이어져 한의학에서 사람해부학의 위치는 더욱 좁아지고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몇년전 한학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소설 동의보감에서는 주인공이 자기 스승을 해부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사회관습상, 특히 윤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한의학에서 언제부터 오늘날과 같은 사람해부를 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해부 역사는, 정확하게 해부를 시작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서양의 해부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세기경 이라고 한다. 사람해부실습에 관한 가장 빠른 시기의 기록은 1910년의 관보로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시간표(관보, 1910. 2. 10)에서 해부실습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당시에 사람해부실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⁴⁾.

한외과대학에서 해부학 및 실습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요청'이나 '해부할 수 있는 법적인 허가'가 1995년에서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관보, 1995. 1. 5)이 공포된 것은 꽤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점진적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시점에서 북한의 서로 다른 해부학용어도 통일시켜야 할 당위성도 시급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⁵⁾.

수천년동안 이어져온 민족의학이며, 전통의학인 한학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더욱 과학화시키는 일환으로 의학의 기초가 되는 사람해부학에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우리나라의 사람해부 역사

* 대전대학교 한외과대학 해부학교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사람해부를 하였던 사람은 임진왜란 당시 참판이던 전유형이었다. 그는 종군도중 길가에 널려있는 적군의 시체를 세구 해부하였으며, 그후 의술이 더욱 정묘해졌다는 기록이 이익의 《성호사설》에 나온다⁴⁾. 조선말기에는 서양의학이 실학자 등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실제적으로 현재와 같은 해부실습과 교육이 이루어진 기록은 1910년 관보에 나타난 대한의원 부속학교 시간표(관보, 1910. 2. 10)의 1학년 2학기에 해부실습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부실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1917년 졸업앨범에 해부실습사진이 나온 것을 보면 1910년대에 정식으로 해부실습이 이루어진 것 같다⁴⁾.

한의학 자체적인 역사는 길지만, 현대와 같은 의학은 독일의학을 본받은 일본을 통해 도입하게 되었으며, 정책적으로 서양의학을 숭상하고 한의학을 외면해 버린 결과로 자연히 한의학의 발전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의 오늘날과 같은 사람해부는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에 서울한외과대학(4년제, 경희대학교 한외과대학 전신)에서 피난시절 부산에서 처음으로 사람해부실습을 했다는 당시 학생들의 구전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시간표, 교과과정 및 해부실습사진 등은 발견할 길이 없다.

2. 중국의 사람해부 역사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준 중국은 송대에서 시체를 해부한 기록이 두번 있다. 한번은 경력년간(1041-1048)에 광서지방에서 일어난 도적의 영수인 구회범 등이 일반인에 유살되어 복부를 해부하여 그림으로 나타냈고, 다른 한번은 송령중(1102-1106)에 역시 도적을 참살하여 의사와 화가에게 해부하고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림은 당시의 유명한 의사 양개의 정리를 거쳐 《존진도》 1권이 저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존진도는 후세에게 전해지지 않았지만, 도보는 원대의 손환에 의해 보존되었으며, 그림들은 간략하고 거칠며, 오류와 상상에 의한 것이 많지만 해부학의 자료가 거의 없는 한의학의 상황하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⁴⁾.

그 후에 이러한 형식의 도보를 모방하고 내용면에서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었으나, 드디어 청대에 와서야 사실적인 사람해부학이 등장한다. 왕청림은 《의림개작》이라는 저서에서 많은 오류를 시정했으며, 사람해부학 분야에서 가장 공이 큰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Ⅲ. 고찰

의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과목 중의 하나인 사람해부학이 서양에 비해 역사가 늦은 것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유교관습에 젖어 시체해부가 어려웠고, 더욱 일제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서양의학을 우대하고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외면한 결과로 생각된다.

서양에서는 일찍이 로마시대에 Galenus(AD 130-201)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부생리를 집대성해 지금도 넓은목근, 뇌신경 및 대뇌정맥(Vena cerebri magna Galeni) 등의 해부학용어가 쓰여지고 있다¹⁾.

동양에서는 사람해부에 대한 기록은 이미 2000년 전에 한의학의 최고서 《황제내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영추》의 〈경수편〉, 〈위장편〉, 〈평인절곡편〉에서 사람의 형태적 구조가 관찰되며⁶⁾ 이는 해부학 부분 뿐만 아니라 한의학 전반에 영향을 준 서적으로 한의학의 성서로 칭송받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서양의학의 해부학과는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한다. 동양의학에서는 기도 무형이고 경락이나 경혈도 반응선과 반응점일 뿐이지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마치 시간도 무형이고 시간자체를 볼 수도 측정할 수도 없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이나 물체의 변화를 관찰해서 간접적으로 시간의 존재를 인식하듯이 기, 경락, 경혈의 존재도 인체의 변화현상을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⁷⁾. 중국의 송대에서는 최초로 시체를 해부한 기록은 있지만 후세에 전해져 내려오지 않으며, 해부학분야 최고의 의학자로 평가되는 청대의 왕청림에 와서야 사실적인 해부에 의해 많은 오류가 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때에 전유형이 처음으로 시체를 해부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서양의 해부처럼 정교하고 학문적인 것 같지는 않은 듯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우리의학은 임상의학보다 기초의학을 더욱 중요시 하는 독일의학 영향을 일본을 통하여 받게 되어 기초의학 분야에서는 해부학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⁸⁾, 근대에 들어와서 부터는 기초과목의 증가 또는 세분화로 해부학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1910년대부터 오늘날과 같은 사람해부가 이루어졌으나 시체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반세기가 지난 1962년에 처음으로 "시체해부 보존법"(1962. 2. 9. 법률 제 1021호)이 제정된 것(표 1)을 보면 일제시대와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인권 등 사회복지차원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해부는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부터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독자적인 한의학의 사람해부가 아니고 의과대학의 보조를 받아 수동적인 교육이

이루어 졌다. 1962년에 제정된 "시체해부 보존법"(1962. 2. 9. 법률 제1021호) 제 2조 '해부에 대한 허가' 사항의 2항에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 있으며, 한의과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표 1). 그러나 법 제정 후 32년만에 1995년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관보, 1995. 1. 5) 제2조 '시체해부 허가' 사항의 2항에는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한의과대학이 포함되어 있어(표 2)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으며,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본다.

이제는 한의과대학에서도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요청이나 해부할 수 있는 법적인 허가가 공포되어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었으나, 사회복지 정책이 점차로 향상되어 있어 과거처럼 연고자가 없는 행려병자는 극히 줄어들고 있다. 현재도 사람해부실습은 시체의 부족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후 전통적인 유교관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외국처럼 시체기증을 통해 의학도들에게 해부실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IV. 결 론

우리나라 사람해부의 역사는 유교사상의 오랜 관습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 서양에 비해 늦었으며, 일제가 들어서고 부터는 서양의학을 숭배한 결과 한의학은 명맥만을 유지 하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해부실습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1910년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한국전쟁 말기인 1953년에 서울한 의과대학(4년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전신)이며, 피난처 부산에서 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한의과대학에서도

'시체해부 허가'와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요청'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屍體解剖保存法(1962. 2. 9)
(去津第1021號)

- 第1條(目的) 本法은屍體(死後 4月以上の死胎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의解剖保存과患者의治療爲한屍體의部分分離 또는 死因의調査 및 病理學的, 解剖學的研究의 適正을期하여國民保健의 向上과醫學(齒科醫學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의教育과研究에寄與함을目的으로한다
- 第2條(解剖에對한許可) ①屍體를解剖하고자하는者는保健社會部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許可를받아야한다(但다음各號의 1에該當할때에는例外로한다)
1. 屍體의解剖에關하여相當한知識과經驗이있는醫師 또는 齒科醫師로서保健社會部長官이適當하다고許可한者가解剖할때
 2. 醫科大學(齒科大學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의解剖學, 病理學 또는 法醫學의教授나 副教授가解剖할때
 3. 第6條의規定에依하여解剖할때
 4. 刑事訴訟法第140條 또는 第173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解剖할때
 5. 海空港檢疫法第11條第6號의規定에依하여解剖할때
- ②前項第1號의規定에依한許可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保健社會部令으로定한다
- 第3條(許可의取消) 保健社會部長官은前條第1項第1號의規定에依하여許可를받은者가다음各號의 1에該當할때에는그許可

(표 1)

최초의 시체해부 보존법 제정
 (1962. 2. 9)

국회에서 의결된 시체해부보존법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印

1995년 1월 5일

부무총리 이종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서상문

◎法律 第4,915號
 屍體解剖保存法改正法律

屍體解剖保存法을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

第1條(目的) 이 법은 屍體의 原因과 病理學的, 解剖學的研究의 適正을 期함으로써 國民保健을 향상시키고 醫學(齒科醫學과 포함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敎育 및 研究에 기여하기 위하여 屍體(死後 4月이상의 死胎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解剖·보존 및 部分分離에 關한 事象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屍體解剖許可) ①屍體를 解剖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官·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但,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의 外지 外지이다.

1. 屍體의 解剖에 關하여 相當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醫師(齒科醫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保健社會部令이 指定한 者가 解剖하는 時
2. 醫科大學(齒科大學과 齒科大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解剖學· 病理學 또는 法醫學을 敎授한 教授· 副教授 또는 兼任敎授가 직접 解剖하거나 醫學을 敎授하는 者로서 하여금 자신의 權限내에 所屬하게 하는 時
3.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解剖하는 時
4. 刑事訴訟法 第140條 또는 第17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解剖하는 時
5. 海空港檢疫法 第11條第6號의 規定에 依하여 解剖하는 時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許可에 關한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3條(許可의 取消) 保健社會部令은 前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표 2)

시체해부 보존법 제정 후 32년만에
 개정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1995. 1. 5)

참 고 문 헌

1. 노민희 등: 인체해부학, 서울, 고문사, pp.14-15, 1993
2. 홍원식 편저: 중국의학사,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pp.150-151, 1987
3. 최승훈: 한의신문, 서울, 대한한 의사협회, 4월 10일자, 15면, 1995
4. 여인석 등: 우리나라 해부의 역사, 대한해부학회지, 25(2): pp.188-194, 1992
5. 원호연: 남.북한의 표면해부학 용어 비교와 개정시안, 대한체질인류학회, 7(2): pp.259-266, 1994
6. 박태호: 인체부위별 명칭에 대한 동서의학적 비교연구, 대전, 석사학위논문, p.1, 1993
7. 전세일: 과학사상, 서울, 범양사, 제 5호, p.63, 1993
8. 대한해부학회: 한국해부학교육의 어제와 오늘, 제1회 해부학 심포지엄, 서울, 계축문화사, p.9, 1987